

【 2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제정안

제출년월일 : 1997. 1. 1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초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도록 권장 하였으나,
- 동조례 제정으로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을 건축코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도록 규정함.

□ 주요골자

- 가.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함. (안제3조제1항)
- 나. 군수는 동조례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안제4조)
- 다.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 (안제6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
  -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군수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근린생활시설
7. 의료시설중 병원
8.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9.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10. 방송·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군수에게 “별표”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건축 개요	위 치					
	건축주			주 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축 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술품 개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p>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양 주 군 수 귀하</p>						
<p>※ 첨부서류 : 1.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2부. 2.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p>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한 것.

## 第2章 文化·藝術

### ●文化藝術振興法<sup>(1995·1·5)</sup> (法律第4883號全文改正)

改正 1995·12·6 法律第5014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傳統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文化藝術”이라 함은 文學, 美術(應用美術을 포함한다), 音樂, 舞踊, 演劇, 映畫, 演藝, 國樂, 寫眞, 建築, 語文 및 出版을 말한다.
2. “文化產業”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創作物 또는 文化藝術用品을 產業의 수단에 의하여 製作·公演·展示·販賣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文化藝術會館”이라 함은 演奏會·舞踊·演劇등의 公演과 展示·學術行事 開催 등의 用途로 建立된 建築物을 말한다.

**第3條 (施策과 勸獎)**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 國民의 文化藝術 活動을 勸獎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 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聯機關 및 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4條 (文化藝術振興委員會)** ①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所屬하에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둔다.

②地方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所屬하에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

(추 68)

를 둔다.

③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第2章 國語의 發展 및 普及

第5條 (國語發展등 計劃樹立) 國家는 國語의 發展 및 普及을 위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6條 (國語審議會) ①文化體育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國語發展 및 普及을 위한 諸般施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에 國語審議會를 둔다.

②國語審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語文規範) ①國家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國語使用에 필요한 사항 (이하 “語文規範”이라 한다)을 國語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語文規範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第8條 (語文規範의 준수)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文書 기타 書類를 작성함에 있어 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教育 또는 公共用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放送廣告物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藝術創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 한다.

### 第3章 文化藝術空間의 設置

第9條 (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獎)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住民들의 보다 높은 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藝術會館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建築物에 대하여 公演場 또는 展示場등의 文化藝術施設을 設置하도록 勸獎하여야 한다.

第10條 (專門藝術團體의 지정운영) ①市·道知事は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專門藝術團體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추 59)

②專門藝術團體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11條 (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자는 그 建築費用의 100分の 1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畫·彫刻·工藝等 美術裝飾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地域의 建築物 또는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建築費用의 比率을 100分の 1이하로 할 수 있다.

### 第4章 文化藝術福祉의 增進

第12條 (文化的 날 設定등) ①國家는 國民으로 하여금 文化藝術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文化的 날과 文化的 달을 設定한다.

②文化的 날과 文化的 달 및 그 行事に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獎勵金支給등) 國家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競演大會에서 入賞한 者에게 獎勵金을 지급하거나 施賞할 수 있다.

第14條 (文化講座 設置)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높은 文化藝術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文化講座 設置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文化藝術을 普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講座를 設置할 對象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講座 設置·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第15條 (學校등의 文化藝術振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의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의 情緒와 教養을 높이기 위하여 學校 및 職場에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 文化藝術活動을 위한 團體를 두도록 勸獎하여야 하며, 그 團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活動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16條 (文化產業의 육성·지원)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文化產業의 育成施策과 融資의 알선, 技術導入과 普及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產業의 育成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995. 7. 13)  
대통령령제14727호전문개정

개정 1996. 3. 30 대통령령제149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 2 조 (기능)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 통일원차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상산업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공보처차관, 정무차관(제 2),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및 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추 72)

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5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 9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8.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9. 방송·통신시설

②법 제11조 본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 본문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1조 본문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등 환경조형물

⑤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제 6 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26조** (문화의 날 설정등) ①법 제1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20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2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국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포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라 함은 15개국이상 이 참가하여 10회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있는

(후 63)

●건축법시행령 (1992. 5. 30)  
대통령령제13655호전문개정

- 개정 1992. 12. 21 대통령령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 1992. 12. 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 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3. 8. 9 대통령령제13953호
- 1994. 5. 28 대통령령제14271호
-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4. 12. 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 1995. 2. 2 대통령령제14521호
- 1995. 3. 23 대통령령제14548호(소년원법시행령)
- 1995. 12. 30 대통령령제14891호
- 1996. 2. 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 1996. 6. 29 대통령령제15096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추 74)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 8.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다.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마.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으로 판정되는 것
  -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

(추 69)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13.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제 1 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 2 조제 1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2. 지적법 제18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3. 도시계획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 5.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추 69)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96·2·22>

건축물의 용도분류(제 2 조제 1 항제13호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다. 공 관

2.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주택으로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

가.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조산소

(5)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안마시술소

(4)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뉘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추 69)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7) 제조업·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8) 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 (9)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0) 노래연습장
- (11)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 (12) 의약품도매점·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5. 근린공공시설

- 가.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나.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수도장 :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노유자시설

- 가.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8. 의료시설

-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추 69)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0.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 · 여관 ·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 가족호텔 · 국민호텔 · 해상관광호텔 · 휴양콘도미니엄 · 한국전통호텔

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 도 ·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 대형점 ·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 : 제 4 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추 69)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14. 위락시설

가. 주점영업(유홍주점 및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나. 특수목욕장

다.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15.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장외 발매소를 포함한다)·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7.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공해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나. 일반공장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 냉동·냉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하역장

(추 69)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위험물취급소
- 바. 액화가스취급소
- 사. 유독물판매소

20.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나. 철도역사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1.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 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22. 동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장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동물검역소

(추 69)

- 2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24. 식물관련시설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라. 기타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식물원을 제외한다)
- 25.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26. 교정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27. 군사시설
- 28.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촬영소
- 29.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30. 장례식장
- 3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32. 청소년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유스호스텔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양 주 군

우)480-014 의정부시 의정부4동 220-66/전화 (0351) 45-4242/전송 43-2512 담당) 남병길

문서번호 문공 86000 - 16

시행일자 1997. 1. 9 (년)

(경유)

받음 기획감사실장

참조

선결	직권		지	
			시	
접	일자	1997. 1. 10	결	
	시간			
수	번호	97	재	계장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이 훈복		

제목 의회 상정조례안 제출

양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따른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1부. 끝.

문 화 공 보

받는곳